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별약관(2201)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① 이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별약관(2201)(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적용 대상은 아래에서 보장 중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에 한합니다.

1.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 이하 '실손의료비보장'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는 실손의료비 보장 신계약에 한합니다.
3. 적용기간은 해당 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1년)으로 하며, 갱신시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할인 대상 보험료는 예정사업비(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가 부가된 보장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일(출생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전환일) 이후 1년까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이하 '안정화할인'이라 합니다)은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의 보장보험료에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른 안정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안정화할인 외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금액과 안정화 할인금액 합계액이 해당 계약 실손의료비보장에 부가된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